

Rev. 3

해 외 부 패 방 지

글로벌 부패방지법의 이해 · 준수를 위한
윤리준법 매뉴얼



감사실

제 · 개정 이력

No.	작성일자	개정사유
Rev. 0	2014. 12.	제정
Rev. 1	2018. 11.	팀명 변경
Rev. 2	2022. 09.	주요 법령 개정사항 반영
Rev. 3	2024. 07.	주요 법령 개정사항 및 최신현황 반영

- 목 차 -

제 1 장 개 요

I. 정 의	1
II. 배 경	1
III. 목 적	1

제 2 장 관련 법규 이해

I.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2
II. OECD 뇌물방지협약	7
III. UN 반부패협약 (UNCAC)	9
IV. 유엔 글로벌 콤팩트 (UNGC)	11
V. 영국 뇌물수수법 (Bribery Act 2010)	12

제 3 장 해외 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I. 부패방지법 준수	16
II. 금지 및 예외 행위	17
III. 제3자 대리인 및 합작투자	19
IV. 내부통제 및 감사	20
V. 보고 및 내부고발자 보호	21

VI. 처 벌	21
---------------	----

제 1 장

개 요

I. 정 의

‘해외 부패방지’라 함은 (주)대우건설(이하 ‘회사’라 한다)이 국제상거래에서 사업상의 또는 기타 부당한 이익을 취득(유지)하기 위하여 외국 공무원 또는 제3자(일반 기업 포함)를 통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어떤 행위를 행하거나 행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직접 또는 중개자를 통하여 ‘부당한’ 금전상의 이익 또는 기타 이익을 외국 공무원 혹은 제3자를 위하여 제의, 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함

II. 배 경

Global 환경	Domestic 환경
❖ 경제의 범세계화 추세 ❖ 신기술 확산과 기업 정보에 접근용이 ❖ 기업의 가치와 도덕의 중요성 부각 ❖ 국제 경제의 불안 증폭	❖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제재강화 ❖ 기업의 ESG에 대한 법제화 움직임 ❖ 부패 Risk가 경영 Risk로 발전 (이미지 손상, 소송비, 벌금 등 재무적 Risk)

III. 목 적

대우건설은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최고 수준의 법적,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고자 합니다. 본 메뉴얼을 통해 임직원 모두가 해외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준수하여 임직원뿐 아니라 회사의 거래(협력)업체, 에이전트 또는 대리인이 해외 부패방지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I.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1. 개 요

미국해외부패방지법 (이하 “FCPA”)은 1977년 뇌물제공금지 규정과 회계규정으로 구성된 연방법으로 기업들이 국제상거래 과정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최근들어 미국 기업보다도 외국기업들을 상대로 한 법 적용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우리도 FCPA로부터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2. 주요내용

1) 제정년도 : 1977년

2) 집행기관 : DOJ (미국 법무부 : Department of Justice),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3) 법 적용 대상자 :

가. 미국 증권법에 따라 증권(주식,채권 등)을 등록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회사

나. 미국인 또는 미국 거주자

다.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라. 미국에 주된 사업장을 둔 외국인 회사

바. 미국에 체류한 비거주 외국인

사. 위 해당자의 임원, 이사, 대리인과 주주

아. 미국회사의 해외자회사, 협력사, 합작회사, 파트너

자. 미국에 자사를 둔 기업

차. 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기업

카. 미국금융시스템을 통하여 자금이동을 하는 기업

타. 미국 밖에 체류했다 하더라도 미국의 통신망, 은행전산망, 메일시스템, 전화, 전신을 조금이라도 사용한 자 또는 기업.

* FCPA는 대상자를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미국 영토 내에 있는 동안' 직접적으로 또는 대행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뇌물제공을 행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타.'와 같이 확대 해석되어 적용하므로 당사가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법 주요내용 요약 :

- A covered person, with a nexus to U.S. commerce(when required)
- takes an action in furtherance of a payment of - or an offer, authorization, or promise to pay money or the giving of anything of value
 - to (a) any “foreign official”, (b) any foreign political party or party official, (c) any candidate for foreign political official, or (d) any official of a public international organization, or (e) any other person while “knowing” that the payment or promise to pay will be passed on to one of the above
 - “corruptly”
 - for the purpose of (a) influencing an official act or decision of that person, (b) inducing that person to do or omit to do any act in violation of his or her lawful duty, (c) securing any improper advantage, or (d) inducing that person to use his influence with a foreign government to affect or influence any government act or decision
 - in order to obtain, retain, or direct business to any person.

법 적용대상자 누구라도 '미국 영토 내(통신망, 은행전산망, 이메일 등을 포함)'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우편이나 주간(interstate) 상거래를 위한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거나, 또는 그 외 '외국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어떤 행위를 행하거나 행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직접 또는 중개자를 통하여 '부당한' 금전상의 이익 또는 기타 이익을 위하여 금전, 금품 기타 경제적 가치 있는 일체의 것을 제안, 지급하거나 지급할 것을 약속 또는 승인하는 행위를 하면 동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5) 처 벌 :

가. 형사처벌

□ 법 인

- 회계규정 위반 : 최고 25,000,000 USD
- 반부패규정 위반 : 최고 2,000,000 USD

□ 개 인

- 회계규정 위반 : 최고 5,000,000 USD의 벌금 또는 최고 20년까지의 징역 또는 병과
- 반부패규정 위반 : 최고 250,000 USD의 벌금 또는 최고 5년까지의 징역형 또는 병과

□ 대 리 인

- 대리인의 범법행위가 '의도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최고 100,000 USD의 벌금 또는 최고 5년의 징역, 또는 병과

나. 민사처벌

- 법인과 개인이 반뇌물규정을 위반할 경우 민사처벌을 통해 최고 10,000 USD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뇌물을 통하여 불법으로 획득한 이익을 계산하여 환수 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

3. 특징 및 주의사항

FCPA는 그 기준이 모호하고 법의 실제 적용 또한 광범위하게 실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제대로 된 준비 또는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가 다수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대비를 위해 사내 엄격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운영을 권고하고 있다.

1) 부패는 미국의 '미'자만 들어가도 불가

미국의 통신망, 은행전산망, E-mail 등을 조금이라도 이용할 경우 미국 연방법인 FCPA가 적용된다. 결국 전 세계 어디에서 뇌물이 지급되든, 그 뇌물을 받는 공무원이 누구이든, 그 뇌물 지급자가 누구이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연관성을 조금이라도 인정할 수 있으면 FCPA를 발동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2) 뇌물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 재가만으로 범죄 성립

뇌물공여와 마찬가지로 실제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경우도 범죄는 성립. Agent에게 뇌물 제공을 재가한 경우도 범죄 성립. 실제 뇌물이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로 인정되며 실제 그 공무원이 권한 남용 행위로 나아갔는지 여부도 범죄에 성립에 상관없이 인정된다. 중개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정을 행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FCPA 적용 대상자가 중개인의 뇌물지급행위를 알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의도적으로 외면하였다면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

3) 뇌물의 범위 = '가치있는 어떤 것이라도'

FCPA에서 말하는 뇌물이란 가치있는 것이면 어떤 것도 상관없으며 금액의 하한도 없다. 현금이나 선물 또는 각종 형태의 접대도 모두 포함된다. 술이나 향응의 제공, 여행 등도 문제될 수 있다. 세미나 또는 교육 명목의 여행의 경우 실제 세미나나 교육에 할당된 시간 외에 여행의 상당부분을 관광과 여가활동에 소비하였다면 이 역시 뇌물의 제공으로 의율할 수 있다.

4) 외국 공무원이라 하면?

FCPA는 외국 공무원의 정의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각종 부처의 공무원, 일반직원, 국제기구의 임직원, 정당, 정당간부, 정당 추천 후보자 등도 포함. 일반적으로 공기업 혹은 국영기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5) 우리나라 공무원은 미국 입장에선 외국 공무원

FCPA에선 외국(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공무원이라 말하지만 우리나라 공무원은 미국에서 봤을 때는 외국 공무원이다. 또한 직원은 공기업, 국영기업을 포함하므로 그 폭이 상당히 넓다고 할 수 있다.

6) 뇌물제공자만 처벌

FCPA는 뇌물을 주는 행위만을 처벌한다. 국가주권의 원칙상 자국의 형사관할권이 미치지 못하는 외국공무원을 처벌할 수 없는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 할 수 있다.

* 2023년 12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해외강탈방지법(Foreign Extortion Prevention Act, 'FEPA')에 서명함으로써, 뇌물을 공여한 회사나 개인 외에도 미국 기업에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해외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는 미국법 상의 근거가 마련됨. (국방수권법안인 NDAA의 일부로서 발효함)

7) 뇌물관련 책임

회사는 뇌물 제공 사실을 알았을 경우뿐만 아니라 묵인한 경우에도 책임이 있다. (Distributor, Consultant 등 제3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회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8) 부패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한 벌금

18 U.S.C § 3571(d)에 따라 부패행위에 따른 이익의 최고 2배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9) 예외(급행료 조항) 및 적극적 항변

가. 예외 조항 (급행료 조항)

통상 급행료 조항으로 불리는 이 예외 조항은 외국 공무원의 '일상적인 정부 행위' 수행을 촉진시키거나 원활하게 진척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일종의 급행료 성격의 돈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으나 실무상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극히 소극적이다. 일단 공무원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에서의 행위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특정 사업 분야의 인허가 등에 관해서는 적용된 예가 없다. 결과적으로 아주 하위직 공무원의 기속 행위에 대해 극히 미미한 액수의 성의표시 정도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OECD 뇌물방지협약은 이 예외(급행료)를 인정하지 않으며 다수의 OECD 회원국이 동 협약을 자국법화 하면서도 이와 같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고 가장 최근에 입법된 영국 뇌물수수법에선 전혀 급행료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사실상 사문화 되는 추세라 할 수 있다.

* 일상적인 정부 행위란 외국에서 어떤 자가 사업을 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허가, 면허 또는 기타 공문을 얻고자 하는 행위, 비자나 작업 주문서와 같은 정부 서류 처리, 상품을 전국에 수송하기 위하여 계약 수행이나 점검과 관련된 경찰의 보호, 우편물 찾기 및 배달 또는 점검 일정을 제공하는 행위, 전화 서비스, 전기 및 수도 공급, 화물 적재 및 양륙 또는 품질 저하가 되는 부패성 생산품 또는 생필품의 보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행위를 말한다고 한다.

나. 적극적 항변 사유 (Affirmative Defenses)

1988년 FPCA 개정 시 두 개의 적극적 항변사유도 함께 도입되었다.

그 중 하나는 해당 지역 성문법(Written Law)에 의하면 합법적인 경우이다. 성문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관행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사실 문명국 중에 아무리 사소한 금액일지라도 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금품 제공을 성문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실무상 적용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이다.

다른 하나의 적극적 항변사유는 합리적인 실비(Reasonable and bona fide expenses)지출 항변이다. 여기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촉, 전시, 설명 등과 직접 관련된 비용(여비, 식비, 숙박비 등)이 해당될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정부계약의 이행에 수반되는 비용도 포함될 수 있는데, 예컨대 석유채굴권 계약 같은 경우 담당 공무원의 해당 공장이나 설비 등에 대한 점검 등 계약 실행을 위해 수반되는 제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지급은 적극적 항변사유가 될 수 있다.

II. OECD 뇌물방지협약

1. 개 요

1997년 채택된 OECD 뇌물방지협약의 태동에는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는 결국 38개국에서 동 협약을 국내법으로 입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OECD 뇌물방지협약의 국내법적 이행을 위해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이하 ‘국제뇌물방지법’)을 제정하여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 주요내용

- 1) 제정연도 : 1997년 채택, 1998년 ‘국제뇌물방지법 제정’, 1999년 발효
- 2) 집행기관 : OECD 가입국에서 각각 집행(국내법 제정)하며 동료심사(Peer Review)와 동료간 압력(Peer Pressure)를 통해 각국 이행 확보 및 점검
- 3) 협약 적용 대상 : OECD 가입국의 자연인 및 법인
- 4) 협약 주요내용 : FCPA의 국제협약화로 주요내용은 동일

제1조 1항 : 형사범죄로 처벌되는 뇌물공여의 구성요건(협약 제1조 제1항)

Each Party shall take such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establish that it is a criminal offence under its law for any person intentionally to offer, promise or give any undue pecuniary or other advantage, whether directly or through intermediaries, to a foreign public official, for that official or for a third party, in order that the official act or refrain from acting in relation to the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in order to obtain or retain business or other improper advantage in the conduct of international business.

각 체약당사국은 국제상거래의 수행에 있어 영업 기타 부당한 이익을 취득 또는 유지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하여, 외국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인에게 당해 공무원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고의적으로 부당한 금전 기타의 이익을 제의·약속하거나 또는 공여하는 행위를 자국법상 범죄행위로 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처 벌 :

- 처벌 수준은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자국내 공무원 뇌물증죄의 법정형에 상응하는 범위여야 함 (협약 제3조 제1항)

- 각 당사국은 자국내 법률상 원칙에 의거, 법인의 책임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되, 법인의 형사상 책임 적용이 어렵다면, 당사국은 재발방지 차원에서 금전상 제재를 포함한 비형사적 제재를 취하여야 함 (협약 제2조 및 제3조 제2항)
- 우리나라의 국제뇌물방지법에 의하면 뇌물공여자 또는 의사를 표시한 자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범죄행위로 인한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뇌물 제공으로 얻은 이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부과 가능 (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 제3조 제1항)
 -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뇌물제공으로 얻은 이익을 사실상 발탁할 수 있는 벌금제도를 요구하는 협약내용에 따름.

3. 특징 및 주의사항

- 1) 국제상거래에서 뇌물공여를 범죄로 규정키로 한 최초의 국제적 합의
국제상거래에서 뇌물거래는 일반영업활동으로 인식되어 처벌을 하려해도 각국의 자국법 체계가 내국인을 주된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사법공조의 미성숙으로 국제적인 뇌물공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도 어려웠다. 1997년 OECD는 동 협약을 통해 뇌물공여를 범죄로 규정키로 한 최초의 국제적인 합의를 이뤄낸다.
- 2) 외국 공무원이라 하면?
입법, 사법, 행정직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의 선출직과 임명직,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자, 공적 국제기구의 직원 또는 대리인도 적용대상이다 (협약 제1조 제4항 가호)
- 3) 뇌물제공자만 처벌
FCPA와 동일하게 당 협약은 뇌물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만 규율한다. 이는 국제 뇌물 방지협약의 한계로 지적될 수도 있으나, 국가주권의 원칙상 자국의 형사관할권이 미치지 못하는 외국 공무원을 처벌할 수 없는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가입국간에는 협약이 효과적으로 이행된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뇌물공여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해당국간 사법공조가 필수적이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수뢰사실이 드러나게 되며, 이 경우 해당 공무원 소속국은 자국 뇌물법으로 동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 4)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죄는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는 범죄행위 (협약 제10조)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죄는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 간주되며 범죄인인도조약이 없는 국가로부터 인도요청이 있다면 이 협약이 그 법적 근거로 간주될 수 있다. 각 당사국은 뇌물공여죄로 인하여 자국민을 인도 내지는 기소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만약 범인인도 요청을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거절한다면 해당국은 기소를 목적으로 자국내 관할당국에 이 사건을 위임하여야 한다.

III. UN 반부패협약 (UNCAC)

1. 개 요

2003년 10월 31일 채택한 반부패국제협약으로서 부패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국 정부가 이를 위해 반부패 기구를 창설하거나 선거, 정당 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 반부패협약은 2003년 12월 9일 멕시코 메리타에서 한국을 포함한 UN회원국 90여 개국이 서명하였으며 이날은 '세계 반부패의 날'로 기념되었다.

2. 주요내용

- 1) 제정연도 : 2003년 채택
- 2) 집행기관 : 유엔 산하기구인 유엔마약범죄국(UNODC)이 동 협약 사무국 역할 수행
우리나라에선 국민권익위원회가 당 협정에 따라 부패방지기구로 지정.
- 3) 법 적용 대상 : UN 가입국 중 비준국가 (2014년 현재 140개국/총 173개국)
- 4) 협약 구성 : 총 8장 71조로 구성
(2008년 한국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비준으로 협약이행)

구 분	주 제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 협약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제2장	예방조치	○ 부패방지기구 설립 ○ 공공부문의 노력 촉구 ○ 공무원행동강령 ○ 민간부문의 부패방지 ○ 사회의 참여
제3장	범죄규정 및 법집행	○ 국가공무원의 뇌물수수 ○ 민간부문의 부패 ○ 법인의 책임 ○ 신고자 등의 보호
제4장	국제협력	○ 범죄인 인도 ○ 사법공조 ○ 법집행 협력
제5장	자산회복	○ 범죄수익 이전의 방지 및 탐지 ○ 재산의 직접 회복 ○ 몰수를 위한 국제협력 ○ 자산의 처분과 반환
제6장	기술지원·정보교환	○ 부패에 관한 정보의 수집·교환 및 분석
제7장	이행체제	○ 협약당사국총회 ○ 사무국
제8장	최종조항	○ 분쟁해결 ○ 서명·비준·수락·승인 및 가입

3. 특징 및 주의사항

- 1) 선진국에만 한정되어 있는 부패방지협약의 전 세계화
OECD 뇌물방지협약등은 OECD 가입국으로 한정되어 주로 선진국이 해당되었다면 UN 반부패협약의 경우 2014년 현재 190개 회원국 중 140개국이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범세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제협약이다.
- 2) 각 당사국의 부패예방조치 이행을 의무화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 적발, 처벌 못지않게 부패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 당사국이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예방조치로 부패방지정책의 개발 및 시행(제5조), 이를 위한 부패방지기구의 설립(제6조), 공공부문의 부패예방조치(제7~11조), 민간부문의 부패예방노력(제12조), 사회의 참여(제13) 등을 규정하고 있다.
- 3) 부패의 범위를 공적분야에만 제한하지 않고 사적영역으로 확장
그 동안 부패행위는 주로 공직자가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에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동 협약은 민간부문의 부패방지를 위한 국가의 의무와 노력으로 규정(제12조)하고, 민간의 뇌물수수과 횡령을 범죄로 규정(제21~22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패 범위를 사적 영역으로 확장하였다.
- 4) 광범위한 부패행위를 범죄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간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부패가 계속 생겨나고 있고, 부패를 정의하는 경우 오히려 부패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는 이유로 동 협약은 부패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대신 동 협약은 어느 곳에서나 부패로 간주되어야 하는 특정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광범위한 부패 행위를 범죄화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 5)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에 있어 국제협력 강화
부패행위의 사후적 적발/처벌뿐만 아니라 그 예방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동 협약은 부패행위의 사후적발/처벌과 관련된 국제협력사항으로 범죄인의 인도(제44조), 수형자이송(제45조), 사법공조(제46조), 법집행에 있어서의 협력(제38조), 합동수사(제49조), 특별수사기법(제50조) 등을 규정하였으며 부패의 예방과 척결에 있어 각 당사국간 기술지원(제60조), 정보의 수집, 교환 및 분석(제61조) 등 국제 협력을 장려하고 있다.
- 6) 부패수익 환수(자산회복)를 위한 국제협력 기반 마련
동 협약은 부패행위를 통해 해외로 빼돌린 자산을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국제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전에는 몰수된 자산의 처분이 몰수한 국가의 재량사항이었으나, 동 협약은 모든 부패수익은 조건 없이 정당한 권원이 있는 국가나 개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화하고 있다.

IV. 유엔 글로벌 콤팩트 (UNGC)

1. 개 요

UNGC는 국제연합(UN)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해 국제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지속균형발전에 기업들의 동참을 장려하고 국제사회 윤리와 국제환경을 개선하고자 2000년 7월 설립된 국제연합 산하 전문기구입니다. 2012년 2월 현재 130여 개국에 걸쳐 8,700여 곳 이상의 기업,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이 가입해 있습니다.

2. 주요내용

- 1) 설립연도 : 2000년 설립
- 2) 기구특성 : 유엔 산하기구, 2007년 7월 한국 유엔글로벌콤팩트 창설
- 3) 기구가입 : 기업들의 자발적 협회 가입
- 4) 글로벌콤팩트 10대원칙 :
 - 가. 인 권 -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하고,
2) 기업은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 나. 노 동 -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 다. 환 경 -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 라. 반부패 - 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3. 특징 및 주의사항

- 지속가능 개발과 모범적 기업시민성의 활성화를 촉진 시키는 자발적 이니셔티브
법적 강제력이 있는 타 협약 및 법령과 달리 글로벌콤팩트는 인권, 노동, 환경과 반부패 분야에서 기업전략을 글로벌 10대원칙과 결합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틀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 시민 이니셔티브'이다.

V. 영국 뇌물수수법 (Bribery Act 2010)

1. 개 요

FCPA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1977), OECD 뇌물방지협약 (1999), UN 반부패협약 (2003) 등 점점 더 범세계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반부패에 대한 노력은 2010년 영국 뇌물수수법의 제정으로 더욱 더 강력해진다. 본사의 위치에 상관없이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 공무원 뿐 아니라 기업인 사이의 뇌물수수도 불법으로 간주되고 급행료 항목도 인정되지 않는 영국 뇌물수수법은 현존하는 반부패 법 중 최고 엄격하고 적용 범위 또한 광범위하다.

2. 주요내용

- 1) 제정연도 : 2010년 입법, 2011년 7월 시행
- 2) 집행기관 : 영국 부패방지국
- 3) 법 적용대상 : 영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개개인과 단체들에 적용.
 - ① 영국 시민, 영국령 시민 외국 시민, 영국 해외시민, 그리고 1981년 영국 국적법 하에 영국 시민으로 신고한 사람
 - ② 영국에서 정상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개인
 - ③ 영국 법이 적용되는 지역에 속해 있는 조직

4) 법 주요내용 :

다음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가. 뇌물공여죄 (제1조)

- 경제적 이익 또는 기타 이익을 제의, 약속 또는 제공
- 관련된 직무 활동을 부적절하게 수행하도록 타인을 유도
- 직무 또는 활동의 부적절한 수행에 대해 보상

나. 뇌물수수죄 (제2조)

- 경제적 이익 또는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동의하거나, 제공받고
- 관련된 직무 또는 활동을 부적절하게 수행

□ 관련된 직무 또는 활동 (제3조)

- ① 공적인 성질을 갖는 직무
- ② 사업과 관련된 활동
- ③ 고용관계와 관련하여 수행한 활동
- ④ 단체(법인 또는 비법인)가 직접 또는 대리인이 수행한 활동

다.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제6조)

- 사업 또는 사업활동 상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경제적 이익 또는 기타이익을 외국 공무원 또는 외국 공무원이 요청하거나 동의하거나 묵인하는 타인에게 제의, 약속 또는 제공하여 외국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라. 영리단체의 뇌물예방 불이행 (제7조)

1) 다음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본 조에 따라 영리단체는 위반 행위를 한 것이다.

- 영리단체 또는 그 영리단체와 관계있는 자가 사업의 획득 또는 유지
- 또는 영리단체를 위한 사업의 수행에서 이익의 획득 또는 유지

2) 영리단체는 자신과 관계있는 자의 뇌물제공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적절한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항변을 함으로써 면책 될 수 있다.

영리단체란?

① 합자회사 (Partnership)

- a) 1890년 합자회사법에 따른 합자회사 또는
- b) 1907년 유한합자회사법에 따라 등록된 유한합자 회사

② ‘관련영리단체’ : 영국 이외의 국가 및 영토 법률에 따라 구성된 유사한 성격의 기업 또는 단체

- a) 영국 법에 따라 설립되어 (영국 또는 그외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
- b) (설립지역과 상관없이) 영국 내에서 사업 또는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그 밖의 기타 법인
- c) 영국 법에 따라 구성되어 (영국 또는 그외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
- d) (구성된 지역에 상관없이) 영국 내에서 사업 또는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그 밖의 기타 합자회사

5) 처 벌 :

가. 개 인

□ 제1조, 2조, 6조 위반한 개인 (뇌물공여, 뇌물수수, 외국 공무원 뇌물제공)

- 약식판결시 : 최고 12개월의 징역 또는 법정최고액 내 벌금. 또는 병과
- 기소판결시 : 최고 10년의 징역 또는 벌금. 또는 병과

나. 법 인

□ 제1조, 2조, 6조 위반한 그 밖의 사람 (뇌물공여, 뇌물수수, 외국 공무원 뇌물제공)

- 약식판결시 : 법정최고액 내 벌금
- 기소판결시 : 벌금

□ 제 7조 위반시

- 기소판결에서 벌금형에 처함

□ 벌금 상한기준 없음

6) 6원칙 : 영국 뇌물수수법의 향변을 위한 적절한 절차의 6가지 원칙

제7조 '영리단체는 자신과 관계있는 자의 뇌물제공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적절한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향변을 함으로써 면책 될 수 있다.'

1) 제1원칙 : 균형 잡힌 절차

- 뇌물수수를 예방하기 위한 부패방지 정책과 절차
- 명확하고, 실제적이며, 접근가능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
- 관련된 모든 개인과 단체에 적용할 것

2) 제2원칙 : 최고경영진의 헌신

- 최고경영진은 뇌물수수를 예방하기 위해 헌신
- 경영진의 의지 : 조직의 리더들이 조성하는 윤리적(비윤리적) 조직 분위기
- 종업원에게 미치는 트리클다운(trickle down) 효과:
 - 경영진의 의지가 윤리와 청렴을 지지한다면, 종업원들은 더욱더 윤리적이고 청렴한 가치를 지지
 - 청렴에 관한 경영진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종업원들은 부패한 활동에 개입할 가능성이 증가

3) 제3원칙 : 리스크 평가

- 사기에 취약한 부분을 규명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
- 리스크 영역들 : 내·외적인 리스크 모두 고려
(국가별 리스크, 거래 리스크, 비즈니스 파트너 리스크)

4) 제4원칙 : 실사 (due diligence)

- 실사 실행 :
 - 종업원 및 여타 관계자들의 범죄 행동을 예방하고 탐지하는 것
 - 누구와 비즈니스를 하는지 아는 것
 - 특별한 비즈니스 관계에 얽혀있는 뇌물수수 리스크를 규명하는 것
- 실사 조치 :
 - 조직이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모든 제3자
 - 조직이 비즈니스를 희망하는 국가
 - 특별한 비즈니스 기회에 존재하는 부패 리스크에 대하여

5) 제5원칙 : 커뮤니케이션 (교육훈련 포함)

- 일단 조직이 부패방지 정책과 절차를 개발했다면, 그 정책과 절차가 비즈니스 과정에서 이해되고 내재화되도록 조직의 보증이 필요함

6) 제6원칙 : 모니터링과 검토

- 뇌물수수 금지 및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컴플라이언스 보장
- 제기되는 모든 이슈들을 규명
- 가능한 행동 :
 - 내부 확인 및 균형
 -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검토를 위한 적절한 계기를 확인
 - 내부 검증을 활용
 - 독립적으로 검증받은 조직을 합류

3. 특징 및 주의사항

1) 부패의 범위를 공공영역에서 민간영역으로 확대

그 동안 법들은 부패의 범위가 외국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영역에서 일어나는 부패에만 한정되어 있는 반면, 영국 뇌물수수법은 이를 민간영역으로 확대 적용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부패의 범위를 민간영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는 'UN 반부패협약'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는 각 회원국에게 자국법을 만들어 민간영역의 뇌물제공을 규제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권고 조항으로 법규 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영국 뇌물수수법과는 구별된다.

2) 뇌물을 받는 행위도 범죄로 취급

FCPA, OECD 뇌물방지협약 등 뇌물을 주는 행위만이 범죄로 규정되었다면 '영국 뇌물수수법'에서는 뇌물을 받는 행위도 범죄로 규정되어 엄격히 처벌한다.

3) '급행료'를 인정하지 않음못해

FCPA에서 인정하는 급행료(외국 공무원의 일상적인 정부 행위 수행을 촉진시키거나 원활하게 진척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은 제외한다는 내용)도 영국 뇌물수수법에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실제 OECD 뇌물방지협약부터 이미 급행료를 인정 않는 것을 권고했고 FCPA의 경우도 결과적으로 아주 하위직 공무원의 기속행위에 대해 극히 미미한 액수의 성의표시 정도를 상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급행료를 적용한다.

4) 합리적 실비 지출은 인정 하지만 그로 인해 이익을 얻으려 하면 뇌물

- 적절한 수준의 접대, 홍보, 기타 유사한 형태의 사업비용은 인정
- 뇌물로 인정하려면 접대, 홍보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의도 확인 필요
- 호화로운 접대, 고비용 접대는 사업상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는 의도 추론이 가능

5) 기업의 방어권 부여 = 'Compliance Program'

'영국 뇌물수수법 제7조 기업(영리단체)은 자신과 관계있는 자의 뇌물제공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적절한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항변을 함으로써 면책 될 수 있다.' 이는 위에 언급한 6가지 원칙을 만족하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제정, 시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6) 미국해외부패방지법 vs 영국 뇌물수수법 비교

구분	FCPA	UK Bribery Act
적용범위	외국공무원	외국공무원 및 기업인
범죄규정	뇌물제공만	뇌물제공 / 뇌물수령 모두
적용대상	미국에 상장된 기업 및 미국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
형사처벌	법인의 경우 200만달러이하 벌금 자연인의 경우 10만달러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병행부과 가능)	무제한적 벌금 또는 최고 10년의 징역 (병행부과가능)
부가처벌	미국정부 관련 계약 참여 불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각종 혜택과 자격 상실	정부조달 참여금지, 자산몰수 등

제 3 장

해외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I. 부패방지법 준수

대우건설 임직원은 이하에 기재된 법률 및 규정을 포함하여 부패방지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록 사회적 또는 비즈니스의 관행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행을 이유로 완전한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한국 및 미국 부패방지, 영국 뇌물수수법 법률 및 규정의 적용

대우건설 임직원은 한국의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뇌물방지 관련규정을 포함하여 글로벌 부패방지 관련 법령(FCPA, 영국 뇌물수수법)을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FCPA는 뇌물제공금지 규정 및 회계 관련 규정으로 구성된 미국 연방 형법입니다. 뇌물제공금지 규정은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을 금지하며, 회계 관련 규정은 회계장부의 기장 및 내부통제 관련 필요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뇌물제공금지 규정은 미국 기업이나 그 임직원 및 에이전트나 '발행인(issuer)'(미국 증권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거래하는 모든 기업) 또는 미국 관할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회계 관련 규정은 미국 기업과 그들의 해외 자회사들, 그리고 발행인들에게 정확한 재무 기록을 유지하고 내부회계통제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미국 영토 내에 있는 동안(통신망, 은행전산망, 메일시스템, 전화, 전신의 사용으로 영토 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의 항목으로 적용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FCPA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FCPA목적상, 한국 공무원은 '외국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모든 대우건설 임직원은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이나 국적을 불문하고 현지의 부패방지 관련 법률 및 규정뿐만 아니라 한국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FCPA 조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령들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민사상, 형사상 법적인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2. 기타 현지 부패방지 관련 법률

대우건설은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의 모든 현지 부패방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대우건설 임직원은 본 가이드라인, 국제적, 지역적 부패방지 관련 법률, 또는 특정행위의 적법성과 적절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전담부서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II. 금지 및 예외 행위

1. 일반적 금지 행위

대우건설 임직원은 아래 규정된 공무원에게 사업을 획득 혹은 유지하거나, 특정인 또는 회사에 사업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거나 또는 부적절한 '사업상 이익'을 확보 (예를 들면, 법률이 인정한 세율보다 더 낮은 세율)하기 위하여 금전 또는 유가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기로 약속하거나, 제의하거나 승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무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방, 시, 도, 주 또는 연방 정부(또는 정부의 부서, 정부기관 또는 정부기구)의 임직원 또는 공식 대리인
- 국영기업 및 국책기업의 임직원
- 공공 국제단체의 임직원 (예를 들어 세계 은행(World Bank) 등)
- 정당 직원 및 공직 후보자

‘유가물’이란 매우 광범위하며 아래 내용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 금전 및 선물
- 식사 및 접대
- 주식
- 여행경비 지급
-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지 않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할인
- 정치 현금
- 채무의 인수 또는 면제

2. 예 외

사업 또는 우대조치에 대한 대가로 부적절하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공무원에 대하여 특정한 업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공무원에게 업무상의 편의 (대우건설 계약의 체결 또는 우호적인 사업관계 축진을 위한 일반적인 이해 증진과 관련된 선물, 판촉물, 식사, 서비스, 접대, 대출, 호의의 선물 또는 유가물을 포함함)를 제공할 경우, 아래 기재된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합니다.

- 업무상의 편의는 현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
- 업무상의 편의는 절대로 부적절해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 업무상의 편의의 수준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 업무상의 편의는 특정 공무원에게 자주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
- 업무상의 편의는 현지 관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업무상의 편의 비용은 대우건설의 장부 및 기록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가. 식사, 선물 및 접대

소액의 판촉물품 및 합리적인 수준의 식사 및 접대는 호의로 또는 예의의 표시로, 또는 친목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식사, 선물 또는 접대는 해당 공무원의 월급의 수준에 비하여 소액이어야 하며, 합리적인 수준의 것으로서 관련 상황에서 이례적인 것이어서는 안되며(즉, 호화로운 수준의 접대는 해당되지 않음),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나치거나 사치스러운 선물 및 접대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 여행경비 지급

대우건설 임직원은 공무원 여행경비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공무원을 위한 여행경비를 지출하기 전에 적정 결재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촉, 시연이나 설명,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무원의 여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합리적인 수준의 실제 지출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의 비업무용 여행경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 가족의 여행경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대우건설이 지급하는 숙박비에는 실제로 발생한 숙박비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식비는 합리적이어야 하며, 적절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 발생경비에 대한 지급은 반드시 거래처(예를 들면, 호텔 및 항공사)에게 직접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 급행료

‘급행료’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일반적인 정부의 업무(가령, 수도 전기 등 공급)에 대하여 그 수행을 촉진하거나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명목적인 금전입니다. FCPA는 제한된 상황 하에서 이와 같은 금원의 제공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한국을 포함한 몇 개 국가의 부패관련 법제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우건설 임직원은 이러한 제공을 하기 이전에 전담부서에 연락하여 상의하고 필요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III. 제3자 대리인 및 합작투자

1. 제3자 대리인

대우건설이 제3자 대리인을 통하여 공무원과 거래하는 경우 제3자 대리인이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래 규정된 실사, 구비서류 및 상시적인 점검절차는 제3자 대리인이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직원은 제3자 대리인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점이나 의문이 있는 경우 전담부서와 연락하여 상의하여야 합니다.

가. 대우건설과 공무원과의 거래를 중개하는 제3자의 유형

대우건설은 제3자들로 하여금 각국 정부에 대한 제품 판매를 지원하도록 하거나 기타 대정부 업무(예컨대 인허가 취득 등)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3자들에는 에이전트, 컨설턴트, 전문 자문가 (법률 및 세무 관련 고문 등) 또는 소매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나. 실 사

- 공무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제3자 대리인 담당 업무 임직원은 이하에 기재된 바에 따라 실사를 수행하고 관련 사항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실사 절차 준수와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3자 대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는 문서화하여 보존하고, 대우건설의 요망사항 및 본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 제3자 대리인의 담당 업무, 대우건설이 해당 업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 그러한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의 것임을 입증하는 근거 등을 문서화합니다.
- 제3자 대리인과의 관계에 대한 정기 점검 과정에서 새로이 수집된 정보를 해당 제3자 대리인의 실사 관련 자료에 반영합니다.

다. 서면 계약

대우건설과 공무원과의 거래를 중개하는 모든 제3자 대리인들 (소매 공급업체 제외)은 대우건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제3자 대리인이 FCPA, 뇌물방지에 관한 기타 법률 및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임을 확인하는 부패방지에 관한 진술
- 제3자 대리인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대우건설이 제3자 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서비스의 내역 등)
- 보수의 조건
- 제3자 대리인이 부패방지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 제3자 대리인이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금품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3자 대리인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리

라. 지속적인 점검 책임

공무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제3자 대리인과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업무를 담당하는 대우건설 직원은 정기적으로 계약서상의 부패방지에 관해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보존합니다.

2. 합작투자

제3자 대리인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일반 규정이 합작투자 및 합작투자 참가자들의 활동에도 적용됩니다.

3. 제3자 대리인 및 합작투자 관련 위험신호

제3자 대리인 및 합작투자 등을 관할하는 대우건설 임직원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유의해야 하며, 위험신호가 발견되거나 제3자 대리인 또는 합작투자에 관련된 우려 또는 질의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부서에 즉시 연락하여 문의하여야 합니다.

- 사업이 진행되는 대상 국가의 부패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알려진 경우
- 제3자 대리인이 공무원에 의해 특별히 추천된 경우
- 제3자 대리인이 FCPA 또는 본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거부하는 경우
- 제3자 대리인이 확인을 요청 받은 사항에 대하여 불완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제3자 대리인이 서면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 제3자 대리인이 복잡한 지급 방법을 요구하는 경우 (선금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다른 제3자를 경유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다른 국가에서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 제3자 대리인이 관련된 서비스에 대하여 과도한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 제3자 대리인이 출처가 의심되거나 부실 기재된 비용 청구를 하는 경우
- 제3자 대리인이 고객의 정치적 기부를 자주 하는 경우
- 제3자 대리인과 해당 공무원 사이에 가족 관계 혹은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 제3자 대리인이 그 유일한 능력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만을 내세우는 경우

IV. 내부통제 및 감사

FCPA는 허위의 장부 기장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재무 거래를 적절하고 공정하게 문서화한 정확한 장부 및 기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모든 회계 기록, 지출, 비용 보고, 청구서, 영수증, 선물, 업무상 접대 및 기타 사업 관련 기록들을 정확하게 기록하며 공개되지 않거나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지출 또는 자산보유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V. 보고 및 내부고발자 보호

대우건설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및 규정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에 컴플라이언스 총괄책임자 또는 전담부서의 자문 또는 협의를 받아야 한다. 위와 같이 보고하는 대신 회사에서 운영하는 신고채널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부패방지법이나 가이드라인의 위반 사실 또는 위반이 의심되는 사실을 보고한 직원을 상대로 고용관계 또는 기타 어떠한 면에서도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VI. 처 벌

직무 수행 과정에서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대우건설 임직원은 직원취업규칙 및 상벌기준 및 시행절차에 따른 징계조치를 받게 됩니다.